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1996. 7. 18 규칙 제34호]

일부개정 1996. 10. 23 규칙 제 36호

1998. 1. 5 규칙 제 42호
1998. 2. 6 규칙 제 49호
1998. 9. 9 규칙 제 56호
1999. 3. 31 규칙 제 62호
1999. 6. 16 규칙 제 70호
1999. 12. 17 규칙 제 85호
2000. 2. 15 규칙 제 92호
2000. 3. 4 규칙 제 95호
2001. 2. 7 규칙 제 98호
2001. 2. 26 규칙 제101호
2001. 4. 25 규칙 제102호
2001. 12. 31 규칙 제113호
2002. 8. 23 규칙 제121호
2003. 4. 10 규칙 제135호
2003. 6. 23 규칙 제139호
2003. 7. 24 규칙 제140호
2003. 11. 20 규칙 제155호
2004. 8. 17 규칙 제164호
2005. 1. 14 규칙 제172호
2005. 3. 15 규칙 제175호
2005. 5. 4 규칙 제177호
2005. 7. 4 규칙 제180호
2005. 9. 23 규칙 제182호
2005. 11. 1 규칙 제184호
2006. 2. 16 규칙 제185호
2006. 7. 26 규칙 제189호
2007. 1. 5 규칙 제193호
2007. 4. 2 규칙 제198호
2007. 11. 1 규칙 제199호
2008. 2. 22 규칙 제202호
2008. 8. 4 규칙 제211호
2009. 7. 1 규칙 제223호
2009. 8. 13 규칙 제224호
2009. 12. 14 규칙 제229호
2010. 5. 4 규칙 제236호
2011. 4. 1 규칙 제245호
2011. 12. 26 규칙 제250호
2012. 6. 4 규칙 제257호
2013. 2. 1 규칙 제266호
2013. 5. 24 규칙 제272호
2013. 12. 20 규칙 제279호
2013. 12. 30 규칙 제280호
전부개정 2014. 10. 20 규칙 제285호
전부개정 2014. 12. 22 규칙 제287호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
일부개정 2016. 6. 29 규칙 제305호
일부개정 2016. 9. 21 규칙 제306호
일부개정 2017. 2. 27 규칙 제316호
일부개정 2018. 4. 1 규칙 제328호
일부개정 2018. 4. 11 규정 제167호(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 2019. 6. 11 규정 제170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
일부개정 2023. 10. 1 규칙 제378호
일부개정 2023. 10. 20 규칙 제381호
일부개정 2023. 12. 29. 규칙 제384호
일부개정 2024. 3. 5. 규칙 제394호
일부개정 2024. 4. 1. 규정 제200호(직제규정)
일부개정 2024. 11. 20. 규칙 제402호
전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09호
일부개정 2025. 12. 11. 규칙 제419호
일부개정 2026. 6. 29. 규칙 제4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조직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연구원의 조직은 [별표1]과 같고, 조직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특정과제 연구 및 현안대응을 위하여 일시적인 TF(Task Force)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운영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조직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타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사무분장

제4조(연구기획실) ①연구기획실의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부와 성과확산부를 둔다. (개정 2026.6.29.)

②기획조정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29.)

1.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2. 조직 및 인력계획 수립
3. 예산기획 및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4. 경영평가, 의회 및 기관협력
5.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6. 연구사업 기획, 조정 및 관리
7. 기타 사업기획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③성과확산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29.)

1. 홍보전략, 언론홍보 및 SNS
2. 정책세미나 및 지역현안토론회
3. 보고서 교정교열 및 출판물 발간
4. 기타 사업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

제5조(인구사회연구실) ①인구사회연구실 내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둔다.

②인구영향평가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연구
2. 인구인지예산연구
3. 인구 관련 사업 평가
4. 인구 관련 정책 연구

제6조(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①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내에 기후환경정보센터를 둔다.

②기후환경정보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기후환경정보 플랫폼 구축과 운영

2. 기후위기 적응 정보 구축과 관리
3. 탄소중립 정보 구축과 관리
4. 광역 도시생태환경지도의 작성과 관리
5.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구축과 관리
6. 기타 기후환경정보 관련 연구

제7조(북부발전연구실) ①북부발전연구실 내에 균형발전지원센터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를 둔다.

②균형발전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2. 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마련 및 평가수행
3. 균형발전사업 컨설팅 및 자문단 운영
4. 경기도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정책 연구
5.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정보체계 운영

③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북부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 관련 연구
2. 경기북부 지역발전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
3. 경기북부 국제평화자유도시화 전략 연구
4.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및 현안 대응 연구

제8조(행정지원실) ①행정지원실의 하부조직으로 인사총무부, 재무관리부, 디지털경영부를 두고, 디지털경영부에는 정보화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6.6.29.)

②인사총무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이사회, 제규정
2. 채용·임용 관리
3. 평가·승진·보직 관리
4. 보수·급여·퇴직금
5. 복리후생 제도
6. 복무·근태 관리
7. 노무·노사 관계 및 법무
8. 교육·인재개발(HRD)
9. 경영공시·통합공시 및 행정정보 공개
10. 임원실운영, 원내행사, 관용차량, 공공구매
11. 기타 인사총무에 관한 업무

③재무관리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2. 기금·출연금 및 기관재원의 운용·관리
3. 지출 및 출납 관리
4. 계약·입찰 및 조달 관리

5. 수탁과제 및 사업비 집행·정산
6. 세무·과세자료 신고 및 결산 공시
7. 기타 재무에 관한 업무

④디지털경영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
2. 정보화 전략 기획
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고도화
4. 정보보안 체계 수립 및 침해 대응
5. 문서관리 및 기록물 관리
6. 정보자료실 운영 및 학술정보 관리
7. 청사 시설 유지관리 및 에너지효율화 업무
8. 자산 취득·운용 및 물품 관리
9.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
10. 기타 디지털경영에 관한 업무

부 칙(2025. 6. 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하고, “기획조정본부”를 “연구기획실”로 한다.

제13조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한다.

②직원채용규칙 [별표1]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험 방 법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서류전형	면 접	-
연 구 직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 접
행정직	신입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 접
	경력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공무직	연구원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 접
	행정원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 접

③연구직 재임용규칙 제7조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④직무연수 시행규칙 제12조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한다.

⑤비상임연구위원 운영규칙 제1조 중 “직제규정 제6조의2”를 “직제규정 제9조”로 한다.

⑥계약직 운영규칙 제1조 중 “제6조의2”를 “제9조”로 한다.

⑦여비지급규칙 [별표1] 국내출장여비 중 직급란과 [별표 2] 국외여비정액표 중 직급란의 “본부장.”을 삭제한다.

- ⑧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한다.
- ⑨정보자료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중 “성과확산부”를 “디지털경영부”로 한다.
- 제22조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 ⑩간행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중 “성과확산부”를 “디지털경영부”로 한다.
- 제11조 중 “홍보·정보부”를 “디지털경영부”로 한다.
- ⑪문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 중 “성과확산부장”을 “디지털경영부장”으로 한다.
- [별표1]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llegible]

- ⑫정보공개 운영규칙 [별표] 경영공시 항목별 공시기준 내용 중 세부업무 “사업계획 및 목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경영평가 결과”의 담당부서를 각각 “연구기획실”, “재무관리부”, “연구기획실”로 한다.
- ⑬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6조의 “재무관리부”를 “인사총무부”로 한다.
- [별표1] 중 배정대상란의 “북부자치연구본부”를 “북부발전연구실”로 한다.

부 칙(2025. 12. 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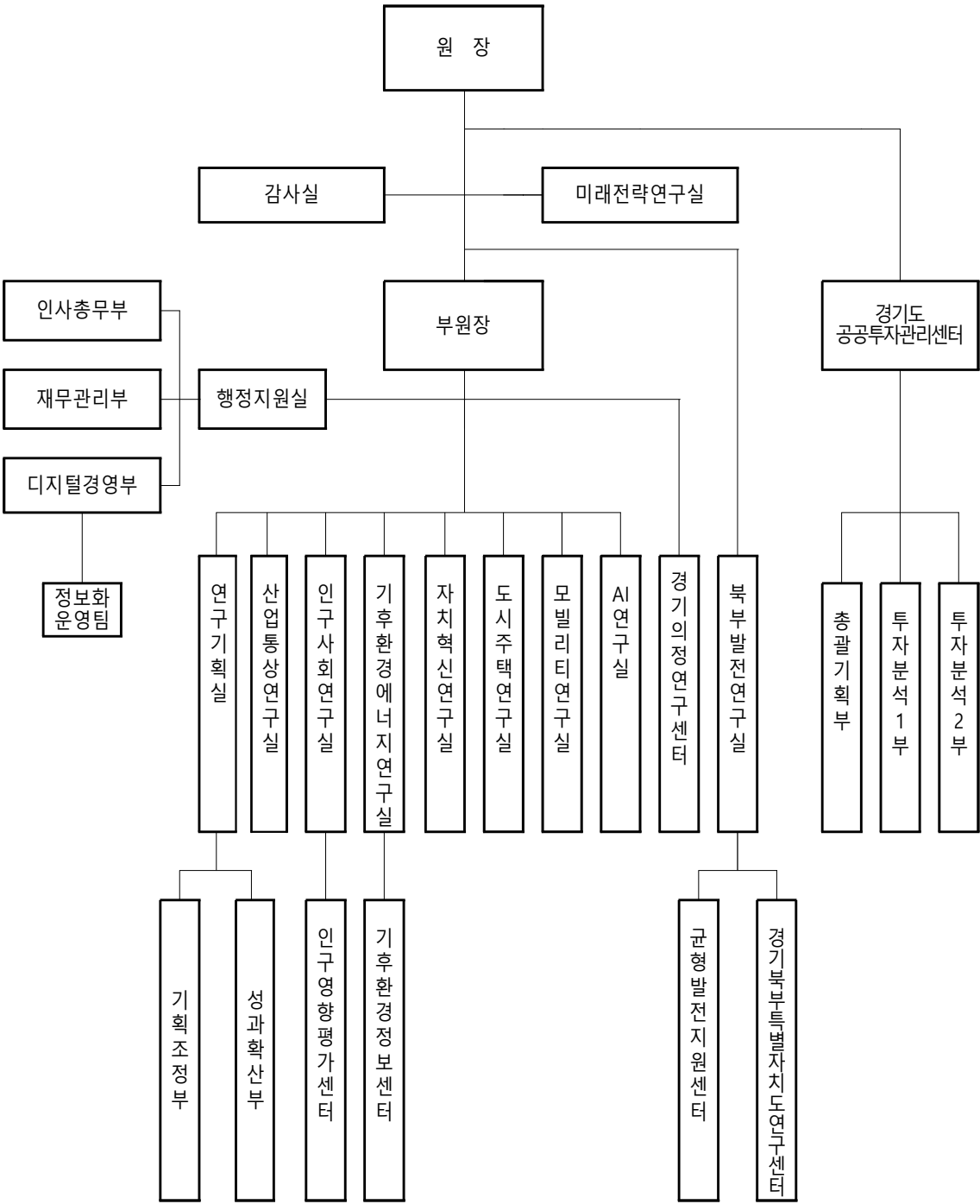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문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기호(제15조 관련)

[별표1] (개정 2025.12.11., 2026.6.29.)

기 구 표(제2조 관련)



[별표2] (개정 2025.12.11.)

기구별 정원(제2조 관련)

구 분	정 원	비 고
계	169	
원 장	1	
부 원 장	1	
감 사 실	3	
각 연구실(센터) 북부발전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	120	
연구기획실 행정지원실	44	